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995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1.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B는 18/161, 피고 C, D, E는 각 12/161, 피고 F, G는 각 8/161, 피고 H, J, K은 각 28/161, 피고 I는 7/161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8. 4. 30.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각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박상훈

별지